

● 제333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 
제3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2025. 12. 22.

운 영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**【서울특별시의회의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**

### **I. 조례안 개요**

#### **1. 제안자 및 제안경과**

- 가. 제안자 : 성흠제 의원(찬성의원 19명)
- 나. 제안일 : 2025. 10. 20.
- 다. 회부일 : 2025. 10. 23.
- 라. 의안번호 : 3253

#### **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은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의 전문정보 접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, 현행 조례는 시민 접근성과 정보공유 측면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함.
- 현행 조례는 이용 대상을 학술연구 목적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, 일반시민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.
- 또한, 「도서관법」 제42조에서 규정한 ‘도서관의 날’ 기념행사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내용이 현행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,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 추진의 근거가 부족함.

- 아울러, 도서관 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조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질서유지 조항이 부재하여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- 이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서, 온라인 열람 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영리 목적의 시민 이용을 허용하며,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독서문화 진흥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도서관의 공공성과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5조제3항 신설).
- 도서관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, 비영리 목적의 시민 이용을 허용하도록 개정함 (안 제8조제4호 개정).
- 「도서관법」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 등 기념행사 및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13조의2 신설).
- 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이용 제한 근거를 명문화 (안 제14조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

다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5. 10. 28.(화) ~ 2025. 11. 1.(토) (5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없음

2) 소관부서 의견조회 : 수정동의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현재)

###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전문도서관의 공공성과 시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의 온라인 열람 및 비영리 목적의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는 한편, 도서관의 날 등 독서문화 진흥 활동 및 도서관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.

### 2 온라인 열람 근거 마련(안 제5조제3항)

- 개정안 제5조는 제3항을 신설하여,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각 과 및 전문위원실(이하 “부서”)에서 제출한 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< 개정안 제5조제3항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자료의 제출) ①·② (생략)  <신 설>	제5조(자료의 제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③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<u>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</u>

- 부서가 전문도서관에 제출한 자료 중 공개 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온라인 열람을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, 정보 접근 방식을 다변화하고 시간·공간적 제약 없이 전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

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전문도서관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임.

- 다만, 현행 조례 제5조는 부서가 생산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인 점을 고려할 때, 공개 가능한 자료에 대한 온라인 시민 열람 규정은 열람·대출에 관해 규정하는 제9조에서 다루는 것이 조문 체계상 적절해 보임.
- 또한, 서울특별시의회가 저작권을 보유한 발간물의 원문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“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”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공개 가능한 제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.

< 개정안 제5조제3항에 대한 수정의견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5조(자료의 제출) ① · ② (생략)  <신설>	제5조(자료의 제출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 ③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	제5조(자료의 제출) ① · ② (개정안과 같음)  <삭제>
제9조(열람 및 대출) ① 자료의 열람장소는 도서관으로 한정하며, 열람·대출시간은 「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. 다만, 의회의 회기 중에는 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에 한정하	제9조(열람 및 대출) ① · ② (생략)	제9조(열람 및 대출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<p>여 열람·대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② 자료의 대출은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. 다만,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</p>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### 3 이용자 범위의 구체화(안 제8조제4호)

- 개정안 제8조제4호는 일반시민의 비영리적 목적 이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8조제4호 일부를 “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민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.
- 비영리 목적의 시민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전문도서관을 시민과 전문정보를 공유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나, 현재도 실무상 시민의 출입·열람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.

< 개정안 제8조제4호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8조(이용자의 범위) 도서관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 4. 그 밖에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	제8조(이용자의 범위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등 비영리목적으 로 이용하려는 시민

4 도서관의 날 등 독서문화 진흥(안 제13조의2 신설)

- 개정안 제13조의2는 사무처장이 도서관 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「도서관법」 제42조제2항<sup>1)</sup>은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-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,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전문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가 있겠음.

1) 제42조(도서관의 날)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,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.  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  
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 개정안 제13조의2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3조의2(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) 사무처장은 「도서관법」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 등 도서관 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**5 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이용 제한(안 제14조 신설)**

- 개정안 제14조는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질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, 사무처장은 이를 위반한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.
- 현행 조례에는 도서관 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, 도서관의 질서 유지 및 이용자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있음.
- 본 개정안은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이용 제한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, 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다수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,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음.
- 다만, 개정안 제14조의 경우 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와 사무처장의 이용 제한 규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문장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함.

< 개정안 제14조에 대한 수정의견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<신 설>	제14조(질서유지) 이용자는 도서관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	제14조(질서유지) ----- ----- -- 사무처장은 질서 위반 -----.

5 종합검토

-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의 온라인 열람과 비영리 목적의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고, 도서관의 날 등 독서문화 진흥 활동 및 이용자의 질서 준수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- 다만, 조례의 완결성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의 조문 체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부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안함.

<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5조(자료의 제출) ① · ② (생략) <신 설>	제5조(자료의 제출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	제5조(자료의 제출) ① · ② (개정안과 같음) <삭 제>
제8조(이용자의 범위) 도서관 이용자의 범위	제8조(이용자의 범위) - -----	제8조(이용자의 범위) (개정안과 같음)

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4. 그 밖에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

제9조(열람 및 대출) ① 자료의 열람장소는 도서관으로 한정하며, 열람·대출시간은 「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. 다만, 의회의 회기 중에는 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에 한정하여 열람·대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자료의 대출은 제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. 다만,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할 수 있다.

<신설>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 등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민

제9조(열람 및 대출) ①  
· ② (생략)

<신설>

1. ~ 3. (개정안과 같음)
4. (개정안과 같음)

제9조(열람 및 대출) ①  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
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3조의2(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) 사무처장은 「도서관법」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 등 도서관 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</p> <p>제 13조의2(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 14조(질서유지) 이용자는 도서관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p>	<p>제 14조(질서유지) ----- ----- -- 사무처장은 질서 위반 -----.</p>
<p>제 14조 (생략)</p>	<p>제15조 (현행 제14조와 같음)</p>	<p>제 15조 (개정안과 같음)</p>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전은애	02-2180-7683